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19-60호
2019. 9. 19.(목)

차 례

공 고(1)

- 도로의 통행 제한(부분통제) 공고문(공고 제2019-809호)1

입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9-806호)3

공									
람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 - 809호

도로의 통행제한(부분통제) 공고문

「도로법」 제76조(통행의 금지·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77조(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의 통행 금지·제한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도로의 종류	구도 / 대전로1291번길	노선명	종로2-688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공사차량을 제외한 전차량	구간	대화동 63-1 ~ 읍내동 486
기간	2019년 09월 19일부터 2019년 10월 20일까지		

이유

- 도로정비공사에 따른 작업 공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그 밖의 사항

- 통제방법 : 주행차로 중 일부 부분통제(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 통행방법 : 교통신호수 배치를 통한 우회도로 안내 및 차량 통제
- 시행청 :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설과
- 연락처 : 대덕구 건설과(☎042-608-5214), 다우정보(주)(☎042-538-2002)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대화동 568-33번지 일원



현황 사진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사항 규정 및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 중 전자 파일 무료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별표).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 10.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민원지적과(전화 : 042-608-6713, FAX : 042-608-3825, E-mail : rvat0109@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지적과 담당자 권성호(전화 : 042-608-67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덕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덕구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구본청”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로, “각호의 1과”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공개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구정과 관련하여”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이하 “구정”이라 한다)과 관련하여”로 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정보가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정보일 경우 계획 수립 또는 조사 등이 완료된 이후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로 하고,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로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한다”를 “사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회의개최”를 “회의 개최”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간사와 서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민원봉사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록물팀장이 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별표]에 의하며, 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자는 감면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구의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정보공개책임관)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청구된 정보공개에 대하여 수수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 표]

수수료 (제10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중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중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 필 름·슬라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중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p>마 이 크 로 필 름 · 슬라이드 등</p>	<p>-1컷마다 200원</p>	<p>· 1장 초과마다 150원</p> <p>○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p> <p>○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p>
<p>전자파일</p>	<p>○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p> <p>○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p>	<p>○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p> <p>○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p> <p>○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p> <p>○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p>

<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

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 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대덕구 (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공개 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 전광역시대덕구 행정(이하 “구 정”이라 한다)운영의 투명성 확 보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 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정보공개청구의 적용범위는 <u>구본청, 직속기관,</u> 사업소 및 동으로 한다.</p> <p>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청 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 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 는 정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 다. 다만, 법 제9조에 의하여 비 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덕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덕구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 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하 “구”라 한다) 본청, ---- -----.</p> <p>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7조제1항제4호에 따라 ----- ----- 각 호와 -----. ----- 따라 ----- ----- 공개하지 않는다.</p>

1. ~ 3. (생략)
4. 구정과 관련하여 구가 주최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결과

5. · 6. (생략)
<신설>

7. (생략)
-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하여는 계획수립이 완료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심의회는 영 제11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등) ① ~ ③ (생략)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1. ~ 3. (현행과 같음)
4.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이하 "구정"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

5. · 6. (현행과 같음)
 7.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8. (현행 제7호와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정보가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정보일 경우 계획 수립 또는 조사 등이 완료된 이후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

제5조(심의회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2. (생략)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 ③ (생략)

제8조(회의) ① (생략)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 ·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략)

<신설>

제9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한 차례만 -----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2.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
----- 사무를 총괄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회의 개최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간사와 서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민원봉사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록물팀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전문개정 2014.5.28.]

제17조(비용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